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초 중 등 교 육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은혜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통합·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나 교육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학교의 통합·운영 여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

3. 주요내용

- ①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, 설문조사, 학교운영위심의, 학교의 장과 협의한 절차 중 하나로 시행
- ② 관할청은 학생·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60일 이내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
- ③ 관할청은 실태조사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결과공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협의예정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1. 5. 21. ~ 6. 2.) 예정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2 ①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법 제30조 제3항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 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.

- 1. 공청회
- 2. 설문조사
- 3.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
- 4. 그 밖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절차

② 관할청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학교규모, 학생통학거리, 교육환경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③ 관할청은 법 제30조 제3항의 실태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에는 실태 조사 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있고 그 공개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6조의2①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법 제30조 제3항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 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. 1. 공청회 2. 설문조사 3.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4. 그 밖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절차 제56조의2② 관할청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학교규모, 학생통학거리, 교육환경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. 제56조의2③관할청은 법 제30조 제3항의 실태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에는 실태 조사 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있고 그 공개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097